

고 성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521호 2022. 5. 2.(월)

입 법 예 고

고성군 공고 제2022-703호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
고성군 공고 제2022-731호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0
고성군 공고 제2022-777호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18
고성군 공고 제2022-784호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31

고 시

고성군 고시 제2022-68호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신용천(마동지구) 정비사업)	38
고성군 고시 제2022-7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군도17호선: 종생마을 도로 확포장공사)	41
고성군 고시 제2022-7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군도6호선: 봉치마을 도로 개설공사)	48
고성군 고시 제2022-7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회화면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	57
고성군 고시 제2022-76호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58
고성군 고시 제2022-77호 마암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2차변경) 승인고시	59
고성군 고시 제2022-80호 고성군 도로명주소 고시	63

회 람									
--------	--	--	--	--	--	--	--	--	--

발행: 고성군, 편집: 군정혁신담당관(670-2642, 행정 2642)

고성군 고시 제2022-81호 고성군관리계획(주차장: 화물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66

고성군 공고 제2022-703호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5. 2.

고 성 군 수

1. 조례명: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주민·기업의 규제 개선요청에 따른 심의를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요건으로 규정하여 규제입증책임제* 근거를 명문화 하고자 함

* 규제 개선에 대해 국민·기업이 규제입증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그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를 폐지·완화 하는 방식

3.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 기존규제의 심사(안 제2조의3)

- 기존규제의 심사에 관한 사항 중 규제입증책임제 근거 마련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3(기존규제의 심사)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 2. (생략)	제2조의3(기존규제의 심사)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기업 또는 주민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입증요청하는 경우 (신설)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기타 조문 정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군민 또는 기관·단체는 2022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참조: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및 기타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고성군 기획감사담당관 법무통계담당

○ 주소: (우)52943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 전화: (055)670-2083, FAX: (055)670-2059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기획감사담당관 법무통계담당(전화: 055-670-208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입증하여야” 를 “입증해야” 로 한다.

3. 기업 또는 주민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제4조제1항 중 “대표하여,위원회” 를 “대표하여, 위원회” 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회의일시,장소” 를 “회의일시, 장소” 로, “통보하여야” 를 “통보해야”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다만,공익” 을 “다만, 공익”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의3(기존규제의 심사)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p> <p>1. 2. (생략)</p> <p><신설></p> <p>② 제1항에 따라 기존규제를 심사하는 경우 소관 부서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한다.</p> <p>③·④ (생략)</p> <p>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생략)</p> <p>제5조(회의) ①·② (생략)</p> <p>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u>회의일시,장소</u>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u>통보하여야</u> 한다.</p> <p>④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다만,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p> <p>⑤ ~ ⑦ (생략)</p>	<p>제2조의3(기존규제의 심사) ① -----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기업 또는 주민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입증</u>을 요청하는 경우</p> <p>② ----- ----- ----- ----- <u>입증해야</u> -----.</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u>대표하여, 위원회</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조(회의)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회의일시, 장소</u> ----- ----- <u>통보</u> <u>해야</u> -----.</p> <p>④----- <u>다만, 공익</u> ----- -----.</p> <p>⑤ ~ ⑦ (현행과 같음)</p>

붙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 시 예상되는 비용이 1억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 제외 대상임.

작성자: 기획감사담당관 박 정 규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규제 정비의 요청) ① 누구든지 위원회에 고시(告示) 등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정비 요청을 받으면 해당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책임자 실명으로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답변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 존치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소명을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존규제의 정비 요청, 답변·소명의 기한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기존규제의 심사)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른 정비 요청 및 제17조의2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삭제 <2009. 3. 25.>

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의 심사는 제14조와 제15조를 준용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화번호:
- 의견 내용(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찬반의견		수정안	수정사유
	찬성	반대		

고성군 공고 제2022-731호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5. 2.

고 성 군 수

1. 개정이유

사전적·확일적으로 전대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한 규정을 삭제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을 통하여 조문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 가. 문맥상 불명확한 문구를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안 제3조)
- 나. 사전적·확일적으로 전대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한 규정 삭제 (안 제8조)
- 다. 실익이 없는 규정 삭제(13조)
- 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3. 의견 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2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참조 : 문화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법인 및 기타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처: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 1) 주소: (52943)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문화관광과
- 2) 전화: (055)670-2202, 팩스: (055) 670-2209

다. 제출 방법 및 문의처

- 1)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전화: (055)670-2202]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 고성군”을 “고성군”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윤리·도덕”을 “윤리·도덕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관혼상제, 공동체 의례 등 전통의례에 관한 사항

제5조제1항 중 “5일전”을 “5일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사용전 일”을 “사용 전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타인”을 “다른 사람”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다하여야”를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타인에게 전대 또는”을 “다른 사람에게”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군수는”을 “군수가”로 하고, “인정되는”을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현행)

충효교육관 시설 사용료

구 분	기본사용료	비 고
회의실 (세미나실)	20,000원	1실 기준, 1회 2시간 이내 (1시간 초과시마다 5,000원 추가) * 하절기 냉방기 사용시 시간당 5,000원 추가 * 동절기 난방기 사용시 시간당 5,000원 추가

■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개정안)

충효교육관 시설 사용료(제5조 관련)

구 분	기본사용료	비 고
회의실 (세미나실)	20,000원	1실 기준, 1회 2시간 이내 (1시간 초과시마다 5,000원 추가) * 하절기 냉방기 사용시 시간당 5,000원 추가 * 동절기 난방기 사용시 시간당 5,000원 추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치) <u>· 고성군</u> 충효교육관(이하 “교육관”이라 한다)은 고성군 고성읍 교사3길 44에 둔다.	제2조(위치) <u>고성군</u> ----- ----- -----.
제3조(업무 및 기능) 교육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u>충·효 교육 및 윤리·도덕</u> 에 관한 사항 2. <u>관혼상제 등 전통윤리·예절</u> 에 관한 사항 3. 4. (생략)	제3조(업무 및 기능) ----- -----. 1. ----- <u>윤리·도덕 교육</u> ----- ----- 2. <u>관혼상제, 공동체 의례 등 전통의례에 관한 사항</u> 3. 4. (현행과 같음)
제5조(사용료) ① 교육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일 <u>5일전</u> 까지 별표에 따른 시설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1. 2. (생략) 3. 사용자가 <u>사용전일</u> 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제5조(사용료) ① ----- ----- <u>5일 전</u> -----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1. 2. (현행과 같음) 3. ----- <u>사용 전일</u> ----- -----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관의 사용을 허가하지 <u>아니</u> 할 수 있다. 1. 2. (생략)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등) ① ----- ----- ----- <u>않을</u> -----. 1. 2. (현행과 같음) ② -----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1. 질서문란, 소란행위 등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2. 3. (생략)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을 타인에게 전대 또는 임대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③ (생략)

제11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교육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 1. ----- 다른 사람-----
- 2. 3. (현행과 같음)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

-----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

② ----- 다른 사람에게 -----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가 -----
- 인정하는 -----

-----.

② (현행과 같음)

<삭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화번호:
- 의견 내용(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찬반의견		수정안	수정사유
	찬성	반대		

고성군 공고 제2022-777호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5. 2.

고 성 군 수

1. 개정이유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계획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이행을 위해 시설사용 위약금 부담경감 방안을 반영함.

2.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 가. 오토캠핑장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나. 오토캠핑장 예약 및 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기타 조문 정비
- 라. 시설사용료 기준 개정(별표 1)
- 마. 예약취소에 따른 사용료 환급기준 개정(별표 2)

3. 의견 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2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참조 : 문화관광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법인 및 기타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처: 문화관광과 관광진흥담당

- 1) 주소: (52943)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문화관광과
- 2) 전화: (055)670-2234, 팩스: (055) 670-2209

다. 제출 방법 및 문의처

- 1)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문화관광과 관광진흥담당 [전화: (055)670-2234]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캠핑트레일러를”을 “캠핑트레일러를 말하고, “카라반사이트”란 카라반을 설치·사용하는 공간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텐트사이트”란”을 ““글램핑”이란 주방, 거실, 침실 등을 갖춘 텐트형 캠핑시설을 말하고, “텐트사이트”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자전거”를 “글램핑”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예약)”을 “(예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사용자는 예약신청 후 현금 또는 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사용료 납부시 사용 예약허가를 득한 것으로 본다.
- ③ 제2항에 불구하고 익일 오전 11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7조제2항 중 “보관하여야”를 “보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반환”을 “3일 이내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8조 중 “게시하여야”를 “게시해야”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제1호”를 “제1항제1호”로, “제시하여야”를 “제시해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다하여야”를 “다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변상하여야”를 “변상해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다하여야”를 “다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목적달성”을 “목적 달성”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손·망실”을 “손·분실”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조하여야”를 “협조해야”로,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로 한다.

제15조 중 “가입하여야”를 “가입해야”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예약이 성립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예약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필요한</u> ----- -----.</p>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 략)</p> <p>2. “카라반”이란 승용차 등 차량에 견인하여 움직이는 이동식 주택으로 주방, 욕실, 거실, 침실 등을 갖춘 <u>캠핑트레일러</u>를 말한다.</p> <p>3. “<u>텐트사이트</u>”란 텐트를 설치·사용하는 공간을 말한다.</p> <p>4. “<u>카라반사이트</u>”란 카라반을 설치·사용하는 공간을 말한다.</p> <p>5. ~ 7. (생 략)</p> <p>8.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텐트사이트, 카라반사이트, 카라반, <u>자전거</u>, 그 밖의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p> <p>9. · 10. (생 략)</p>	<p>제3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u>캠핑트레일러</u>를 말하고, “<u>카라반사이트</u>”란 카라반을 설치·사용하는 공간을 ---.</p> <p>3. “<u>글램핑</u>”이란 주방, 거실, 침실 등을 갖춘 텐트형 캠핑시설을 말하고, “<u>텐트사이트</u>”란 ---.</p> <p><삭 제></p> <p>5. ~ 7. (현행과 같음)</p> <p>8. ----- ----- <u>글램핑</u> ----- -----.</p> <p>9. · 10. (현행과 같음)</p>
<p>제5조(예약) ① 캠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u>예약하여야</u> 하며, 시설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예약할 수 있</p>	<p>제5조(예약 등) ① ----- ----- <u>해야</u> ----- -----.</p>

다.

② 사용자는 예약신청 후 3일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7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생략)

② 시설사용권은 캠핑장 사용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제6조 중 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 각 호에 따른 허가취소 등으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지라도 군수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요금의 게시 등) 관리자는 사용료 등을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한다.

1. ~ 3. (생략)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100분의 30을 감면

② 사용자는 예약신청 후 현금 또는 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사용료 납부시 사용 예약허가를 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익일 오전 11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7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현행과 같음)

② -----
보관해야 -----.

③ -----
-----3일 이내 반환할-----

----- 않는다.

제8조(요금의 게시 등) -----
----- 게시해야 -----.

제9조(사용료 감면)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5. ~ 8. (생 략)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감면 대상자는 입장시 신분증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10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별표 3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생 략)

④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캠핑장의 설치 목적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개·보수 등 유지·관리 책임과 손·망실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제13조(지도감독) ① 수탁자는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5. ~ 8.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

----- 제시해야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자의 책임) ① -----

---- 다해야 ----.

② ----- 준수
해야 -----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변상해야 ----
--.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

다해야 ----.

② ----- 목적달성-----
----- 해야 ----.

③ -----
----- 손·분실-----
-----.

제13조(지도감독) ① -----
----- 보고해야 ----

-----.

②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
하여야 하며, 군수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보험가입)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
라 캠핑장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 및
돌발사고의 발생에 대한 손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군이 부담한 보험
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
과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 협조해야 -

----- 해야 한다.

제15조(보험가입) -----

----- 가입해야 -----

<삭 제>

■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 조례 [별표 1] (현행)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사용료 기준(제7조 관련)

(단위:원)

시설별	사용기준 (면적)	성수기	비수기	비 고
카라반 (8인용)	1대당	150,000	100,000	
카라반 (4인용)	1대당	120,000	80,000	
카라반사이트	1개소	35,000	30,000	
텐트 사이트	1개소	25,000	20,000	
자전거	1대당	2,000	2,000	3시간 기준

- * 1일 사용시간: 당일 14:00 ~ 익일 12:00 기준이며, 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
(1시간 초과 2시간까지 5,000원, 2시간 초과 4시간까지 10,000원,
4시간 초과 시 1일 사용료 추가)
- * 성수기: 7월 ~ 8월(2개월),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
(예시: 24일이 공휴일이면 23일은 성수기요금 적용)
비수기: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 * 자전거 대여: 3시간 초과 시 30분당 500원의 추가요금 징수
(1일 대여 시 10,000원)

■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 조례 [별표 1] (개정안)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사용료 기준(제7조 관련)

(단위:원)

시설별	사용기준 (면적)	성수기	비수기	비 고
카라반 (6인용)	1대당	150,000	120,000	
카라반 (4인용)	1대당	120,000	100,000	
글램핑 (4인용)	1대당	150,000	120,000	
카라반 사이트	1개소	40,000	40,000	
텐트 사이트	1개소	30,000	30,000	

- * 1일 사용시간: 당일 14:00 ~ 익일 12:00 기준이며, 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
(1시간 초과 2시간까지 5,000원, 2시간 초과 4시간까지 10,000원, 4시간 초과 시 1일 사용료 추가)
- * 성수기: 7월 ~ 8월(2개월),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
(예시: 24일이 공휴일이면 23일은 성수기요금 적용)
- 비수기: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 * 전기료와 쓰레기 수거료로 카라반·카라반사이트는 7,000원, 글램핑·텐트사이트는 6,000원으로 추가요금 징수.

[별표 2] (현행)

예약취소에 따른 사용료 환급기준(제7조 관련)

구 분	배상 및 환급기준	비고
<p>1)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2~4일 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통보가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료의 120%배상 - 사용료의 150%배상 - 사용료의 200%배상 	
<p>2) 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2~4일 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료의 80% 환급 - 사용료의 50% 환급 - 사용료 환급하지 않음 	
<p>3)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예약취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료 전액 환급 	

[별표 2] (개정안)

예약취소에 따른 사용료 환급기준(제7조 관련)

구 분	환급 및 배상기준	비고
<p>1)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2~4일 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p>2) 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2~4일 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p>3) 태풍 등 천재지변, 화재 등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예약취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배상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배상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30%배상 -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료 10% 공제후 환급 - 사용료 20% 공제후 환급 - 사용료 30% 공제후 환급 - 사용료 전액 환급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화번호:
- 의견 내용(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찬반의견		수정안	수정사유
	찬성	반대		

고성군 공고 제2022-784호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5. 2.

고 성 군 수

1. 개정이유

고성공룡박물관의 체계적 운영 및 관광활성화를 위해 관람료 징수 및 감면 규정 등을 정비하여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 맞춤법 및 표현 수정

나. 관람료 등 감면 규정 정비(안 제10조 제1항 제11호)

1) (기존)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에 따른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

2) (변경)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세대

다. 관람료 요금표 정비 및 국내 자매결연도시 주민 혜택 반영(별표 1)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군민 또는 기관·단체는 2022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참조: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및 기타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고성군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관리담당

○ 주소: (우)52963 경남 고성군 하이면 자란만로 618,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 전화: (055)670-4456, FAX: (055)670-4459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기획감사담당관 관리담당(전화: 055-670-445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를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로 한다.

제5조 중 “사용하여서는 아니” 를 “사용해서는 안” 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납부하여야” 를 “납부해야” 로 한다.

제9조제2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한다” 를 “그렇지 않다”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아니한다” 를 “않는다”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할” 을 “그렇지 않을” 로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2조의 규정” 을 “제2조” 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의 규정” 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 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1항의 규정” 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1항” 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규정” 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경남 아” 를 “경남아” 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자
- 11.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세대
- 1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1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1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 을 “제1항” 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주의 의무를 다” 를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노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파손·훼손·망실한” 을 “파손·훼손·분실한”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 을 “제2항” 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망실” 을 “분실” 로, “아니하도록” 을 “않도록”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망실” 을 “분실” 로 한다.

제21조제2항제2호 중 “「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열람신청서”를 “열람허가신청서”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1] (현 행)

관람료 및 주차료(제8조제2항 관련)

1. 관람료

(단위 : 원)

구 분	관 랑 료			비 고
	어린이	청소년, 군 인	어 른	
개 인	1,500	2,000	3,000	-
단 체 (30명이상)	1,000	1,500	2,500	- 관광지 연계 할인 적용
고성군민	500	500	1,000	- 협의지자체 주민 적용

※ 어린이: 만 3세 ~ 만 12세

※ 청소년: 만 13세 ~ 만 18세

2. 주차료

(단위 : 원)

구 분	주 차 료		비 고
	일 반	경차, 저공해차량, 장애인 탑승차량	
이 룰 차	500	-	
소 형	2,000	1,000	
대 형	3,000	1,500	소형 외 모든차종

※ 소형: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미만의 화물차

※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함.

■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1] (개 정) <2022. 00. 00.>

관람료 및 주차료(제8조제2항 관련)

1. 관람료

(단위 : 원)

구 분	관람료			비 고
	어린이	청소년, 군 인	어 른	
개 인	1,500	2,000	3,000	-
단 체 (30명이상)	1,000	1,500	2,500	- 관광지 연계 할인 적용
고성군민	500	500	1,000	- 협의지자체 주민 적용 - 국내 자매결연도시 주민 혜택 적용

※ 어린이: 만 3세 ~ 만 12세

※ 청소년: 만 13세 ~ 만 18세

2. 주차료

(단위 : 원)

구 분	주차료		비 고
	일 반	경차, 저공해차량, 장애인 탑승차량	
이 룬 차	500	-	
소 형	2,000	1,000	
대 형	3,000	1,500	소형 외 모든차종

※ 소형: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미만의 화물차

※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함.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화번호:
- 의견 내용(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찬반의견		수정안	수정사유
	찬성	반대		

고성군 고시 제2022-68호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

고성군에서 시행하는 『신용천(마동지구) 정비사업』에 대하여 「하천법」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 4. 25.

고 성 군 수

1. 하천공사의 명칭 : 신용천(마동지구) 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하천공사의 목적

- 본 공사는 기존 하천 하폭부족, 기설 제방 및 호안이 노후하거나 낮아 집중호우 시 인근 농경지 침수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으로 신용천(마동지구)정비사업을 통해 사유재산 및 공공시설물을 보호하고, 안정적 영농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하천공사의 개요

- 사 업 명: 신용천(마동지구) 정비사업
- 사업내용: 하천정비 L= 280m

3. 하천공사 시행 지역의 위치

-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 1759-13 ~ 거류면 신용리 1744-31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시행자 : 고성군수(건설과)
- 주 소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5. 하천공사의 착공 및 준공 예정일

- 2022. 5월 ~ 2023. 4월

- 6. 수용하거나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소유자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붙임 참조)

7. 기타사항

- 설계도서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 등은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고성군 건설과 (055-670-2763)에 비치합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 [신용천(마동지구) 정비사업]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 권리조서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계				3,408	3,408						
1	거류면 신용리	1759-14	답	7.0	7.0	김*철					
2	거류면 신용리	1759-13	답	473.0	473.0	김해김씨 상관파종중					
3	거류면 신용리	1759-17	답	277.0	277.0	김*근					
4	거류면 신용리	1759-15	답	301.0	301.0	안*순					
5	거류면 신용리	1757-1	답	1,023.0	1,023.0	도*경외 2인					
6	거류면 신용리	1756-1	답	24.0	24.0	고*기					
7	거류면 신용리	1759-16	답	384.0	384.0	김*수					
8	거류면 신용리	1759-19	답	93.0	93.0	안*순					
9	거류면 신용리	1753-3	답	185.0	185.0	임*순외 5인					
10	거류면 신용리	1744-30	답	515.0	515.0	김해김씨 상관파종중					
11	거류면 신용리	1744-31	답	58.0	58.0	성*중					
12	거류면 신용리	1759-18	답	68.0	68.0	안*순					

고성군 고시 제2022-7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군도17호선: 종생마을 도로 확포장공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제91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 4. 25.

고 성 군 수

□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사항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m)
기정	군도	군도17호선 (소로 2-147)	추계~ 가천선	대가면 갈천리 63-4번지 일원	11,440	대가면 갈천리 산193-1	대가면 갈천리 산151	-	555
변경	군도	군도17호선 (소로 2-147)	추계~ 가천선	대가면 갈천리 63-4번지 일원	11,390	대가면 갈천리 산193-1	대가면 갈천리 산151	-	555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종생마을 도로 확포장공사가 완료된 구간내에 현재의 토지이용현황을 반영하여 도로 확포장공사에 포함되지 않는 토지를 도로구역에서 제척하기 위함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당초 : 2019. 12. 19 ~ 2020. 12. 31
- 변경 : 2019. 12. 19 ~ 2022. 12.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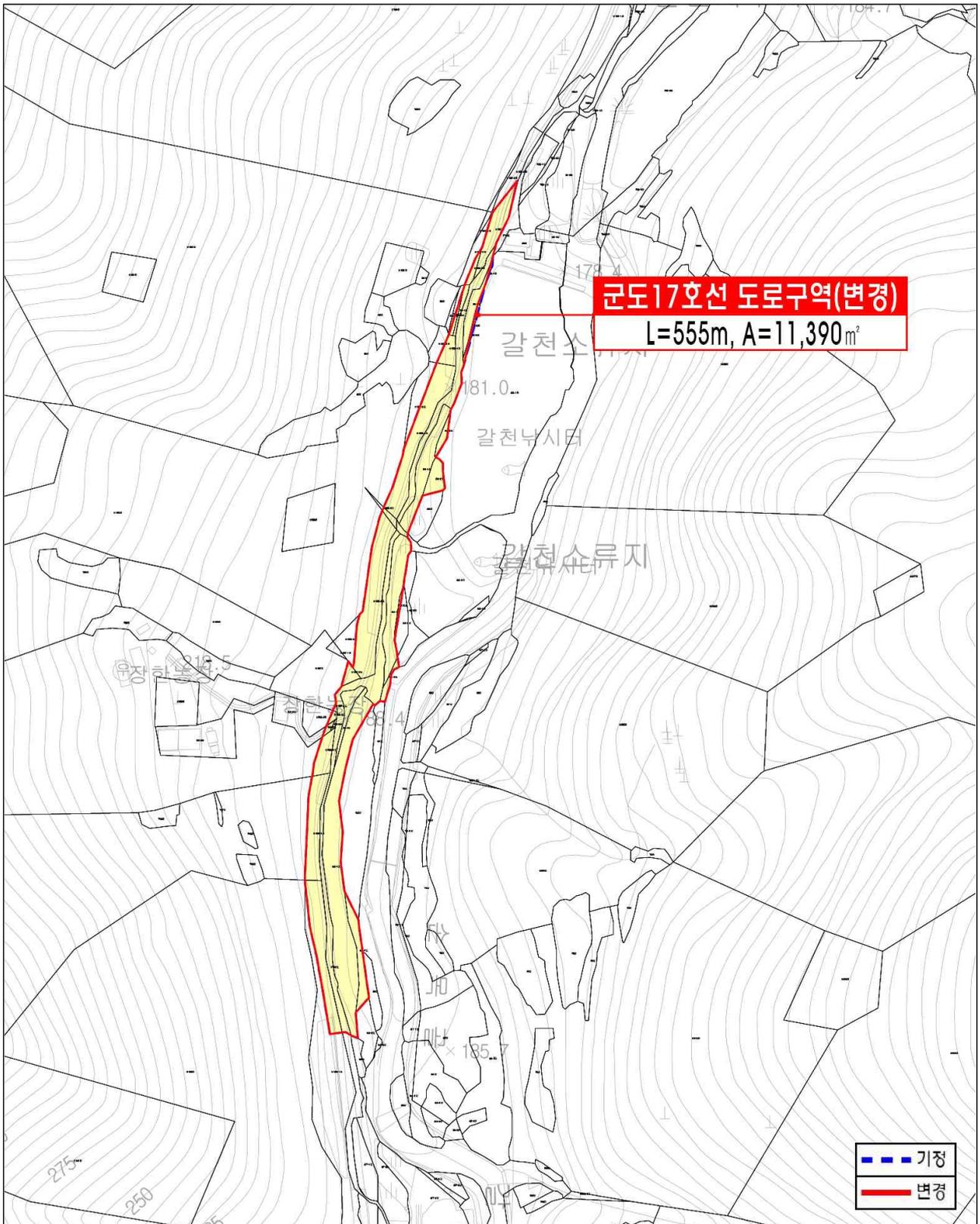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장소: 경상남도 고성군 건설과(055-670-2582)
-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4일간

6. 도로구역 결정(변경)도



□ 도로구역 결정에 따른 의제 협의사항

1. 고성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47	8	국지 도로	555	대가면 갈천리 산193-1	대가면 갈천리 산151	일반도로	-	고성군고시 제2020-6호 (2020.1.13.)	군도17
변경	소로	2	147	8	국지 도로	555	대가면 갈천리 산193-1	대가면 갈천리 산151	일반도로	-		일부구간 선형변경

나. 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소로2-147	소로2-147	○ 일부구간 선형변경 - 연장: 555m(변경없음) - 폭원: 8m(변경없음)	○ 종생마을 도로 확포장 공사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군계획시설(도로) 선형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2. 고성군계획시설(도로: 소로2-147호선) 실시계획 변경 협의 사항

- 군도17호선(종생마을도로 확포장공사)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경남 고성군 대가면 갈천리 63-4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고성군계획시설(도로: 소로2-147호선) 조성사업
- 명칭: 종생마을도로 확포장공사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당초: 연장 555m, 폭원 8m, 면적 11,440㎡
- 변경: 연장 555m, 폭원 8m, 면적 11,390㎡(감 50㎡)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 성명: 고성군수(건설과)

마.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 예정일

- 착수일: 2019년 12월 19일
- 준공 예정일
 - 당초: 2020년 12월 31일 → 변경: 2022년 12월 31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아래 참조

사. 관계도서: 실음 생략(고성군 도시교통과에 비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중생마을 도로 확포장공사)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권리조서			비고
					기정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계				61,631	11,440	11,390						
1	대가면 갈천리	55-2	유	223	223	223	고성군					
2	대가면 갈천리	55-3	유	87	87	87	고성군					
3	대가면 갈천리	55-4	유	11	11	-	고성군					
4	대가면 갈천리	55-5	유	39	39	-	고성군					
5	대가면 갈천리	55-6	유	28	28	28	고성군					
6	대가면 갈천리	56-1	답	536	536	536	고성군					
7	대가면 갈천리	56-2	답	199	199	199	고성군					
8	대가면 갈천리	58-1	도	73	73	73	고성군					
9	대가면 갈천리	58-3	대	42	42	42	고성군					
10	대가면 갈천리	63-1	도	177	177	177	고성군					
11	대가면 갈천리	63-4	도	2,221	2,221	2,221	고성군					
12	대가면 갈천리	63-5	대	10	10	10	고성군					
13	대가면 갈천리	63-7	답	324	324	324	고성군					
14	대가면 갈천리	63-9	도	27	27	27	고성군					
15	대가면 갈천리	64-1	답	715	715	715	고성군					
16	대가면 갈천리	64-2	답	72	72	72	고성군					
17	대가면 갈천리	65-5	답	32	32	32	고성군					
18	대가면 갈천리	1692-6	천	45,971	32	32	농림축산식품부					
19	대가면 갈천리	1719	도	1,595	715	715	국토교통부					
20	대가면 갈천리	1720	도	2,043	1,222	1,222	국토교통부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권리조서			비고
					기정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21	대가면 갈천리	산151	임	397	397	397	고성군					
22	대가면 갈천리	산153-3	임	67	67	67	허*화 외 4인	진주시 하대동 100 대림A 1*02				미등 기
23	대가면 갈천리	산153-4	임	149	149	149	허*화 외 4인	진주시 하대동 100 대림A 1*02				미등 기
24	대가면 갈천리	산155-1	구	90	90	90	국토교통부					
25	대가면 갈천리	산155-4	임	1,035	1,035	1,035	고성군					
26	대가면 갈천리	산155-5	임	1,175	1,175	1,175	고성군					
27	대가면 갈천리	산157-2	임	77	77	77	고성군					
28	대가면 갈천리	산157-3	임	6	6	6	고성군					
29	대가면 갈천리	산163-4	임	263	263	263	고성군					
30	대가면 갈천리	산163-5	임	27	27	27	고성군					
31	대가면 갈천리	산192-1	임	587	587	587	고성군					
32	대가면 갈천리	산193-1	도	3,333	782	782	고성군					

고성군 고시 제2022-7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군도6호선: 봉치마을 도로 개설공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제91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 4. 29.

고 성 군 수

□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사항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m)
기정	군도	6호선 (소로 2-74)	용안~ 봉동선	개천면 봉치리 751번지 일원	19,031	개천면 봉치리 667-2	개천면 봉치리 산132-3	-	1,085
변경	군도	6호선 (소로 2-74)	용안~ 봉동선	개천면 봉치리 751번지 일원	19,020	개천면 봉치리 667-2	개천면 봉치리 산132-3	-	1,085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보상 미협의에 따른 도로 선형 조정에 따른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당초 : 2018. 8. 20. ~ 2019. 12. 31.
- 변경 : 2018. 8. 20. ~ 2023. 12.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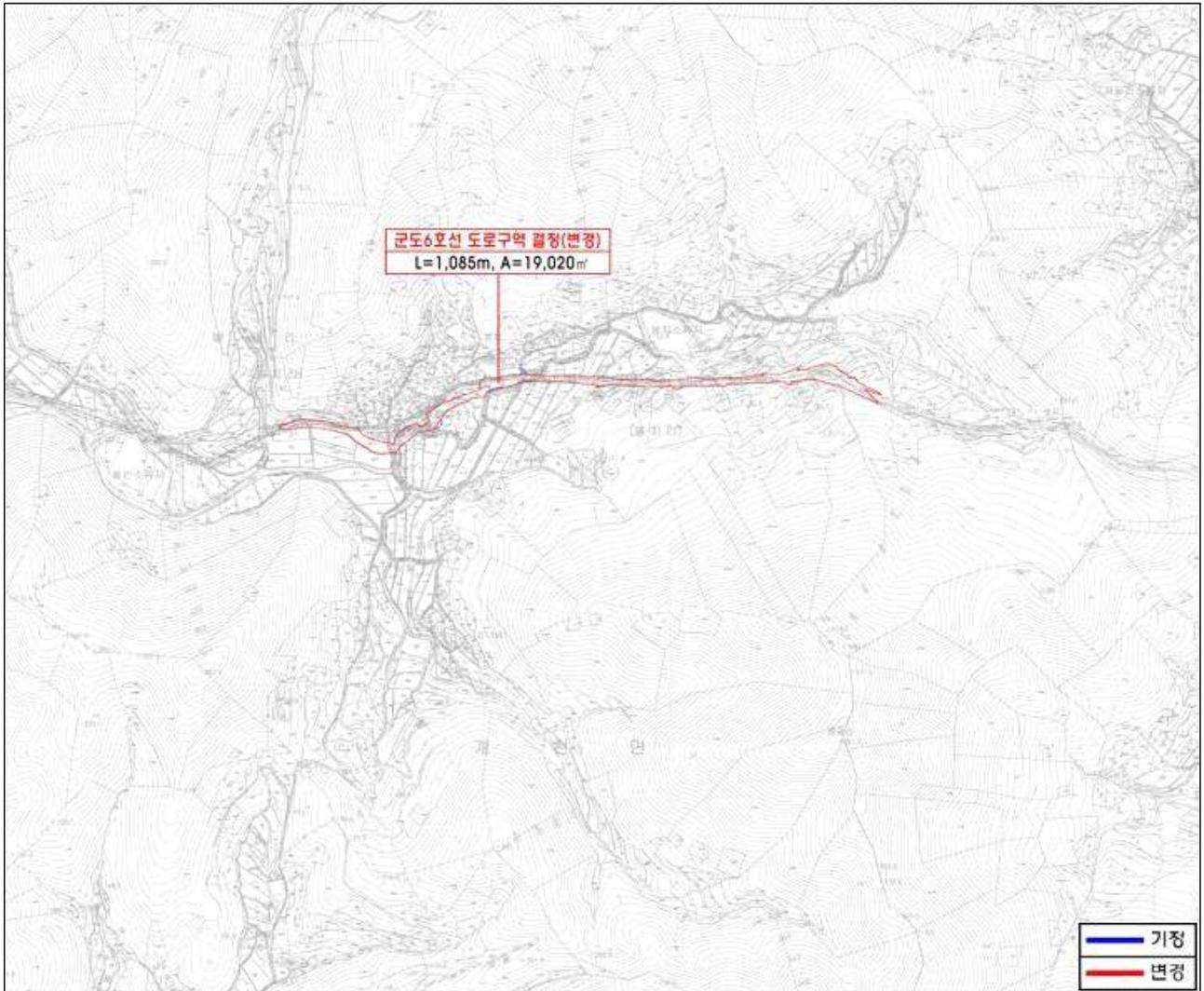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장소: 경상남도 고성군 건설과(055-670-2582)
-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4일간

6. 도로구역 결정(변경)도



□ 도로구역 결정에 따른 의제 협의사항

1. 고성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74	8	국지 도로	4,915	소로2-106 (구만면 효락리)	소로2-110 (개천면 용안리)	일반도로	-	고성군고시 제2009-5호 (2009.1.8.)	군도6
변경	소로	2	74	8	국지 도로	4,915	소로2-106 (구만면 효락리)	소로2-110 (개천면 용안리)	일반도로	-		일부구간 선형변경

나. 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소로2-74	소로2-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구간 선형변경 - 연장: 4,915m(변경없음) - 폭원: 8m(변경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치마을 주민들의 통행 불편해소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급회 군계획시설(도로)의 일부구간 선형을 변경하고자 함.

2. 고성군계획시설(도로: 소로2-74호선) 실시계획 변경 협의 사항

- 군도6호선(봉치마을 도로 개설공사)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경남 고성군 개천면 봉치리 315-2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고성군계획시설(도로: 소로2-74호선) 조성사업
- 명칭: 봉치마을 도로 개설공사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당초: 연장 318m, 폭원 8m, 면적 5,291㎡
- 변경: 연장 318m, 폭원 8m, 면적 5,280㎡(감 11㎡)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 성명: 고성군수(건설과)

마.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 예정일

- 착수일: 2018년 8월 20일
- 준공 예정일
 - 당초: 2019년 12월 31일→ 변경: 2022년 12월 31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아래 참조

사. 관계도서: 실음 생략(고성군 건설과에 비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봉치마을 도로 개설공사)

(기정)

연번	위치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조서			비고
				대장면적(m ²)	편입면적(m ²)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계				54,647	5,291						
1	개천면 봉치리	315-1	대	79	79	고성군					
2	개천면 봉치리	353	답	37	37	고성군					
3	개천면 봉치리	181-14	답	157	157	고성군					
4	개천면 봉치리	312-4	대	3	3	고성군					
5	개천면 봉치리	353-2	답	38	3	고성군					
6	개천면 봉치리	181-12	답	96	52	고성군					
7	개천면 봉치리	311-1	답	136	64	고성군					
8	개천면 봉치리	187-3	답	54	33	고성군					
9	개천면 봉치리	192-3	도	56	38	고성군					
10	개천면 봉치리	751	천	46,144	696	국 (건설교통부)					
11	개천면 봉치리	759	도	1,577	42	국 (건설교통부)					
12	개천면 봉치리	759-2	도	7	7	국 (건설교통부)					
13	개천면 봉치리	637	구	34	30	국 (농림축산식품부)					
14	개천면 봉치리	564	도	950	7	국 (농림축산식품부)					
15	개천면 봉치리	640	구	188	45	국 (농림축산식품부)					
16	개천면 봉치리	315-2	대	14	14	김*범	경상남도 고성군 개천면 구만로				
17	개천면 봉치리	181-1	답	196	20	김*채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4-1 갑오마을부영아파트				
18	개천면 봉치리	181-17	답	518	270	김*곤	경상남도 창원시 정산구 원이대로 **4, (상남동성원아파트)				
19	개천면 봉치리	181-18	답	330	43	김*원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대우아파트				
20	개천면 봉치리	311-2	답	61	61	김*길	개천면 봉치리				
21	개천면 봉치리	312-6	대	50	50	김*길	개천면 봉치리				
22	개천면 봉치리	309-7	답	248	248	김*술	개천면 봉치리				
23	개천면 봉치리	309-6	답	201	201	김*식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반송로 **1, (반송동, 삼한1차아파트)				
24	개천면 봉치리	303-4	답	482	482	김*식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반송로 **1, (반송동, 삼한1차아파트)				
25	개천면 봉치리	304-4	답	207	207	김*식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동로 **번길 (연산동)				
26	개천면 봉치리	299	답	571	571	김*일	개천면 봉치리				
27	개천면 봉치리	292-3	답	34	34	한*우	개천면 봉치리				

연번	위치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조서			비고
				대장면적(m ²)	편입면적(m ²)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28	개천면 봉치리	187	답	626	594	한*구	울주군 언양면 서부리 **7				
29	개천면 봉치리	291-1	도	20	20	한*택	개천면 봉치리				
30	개천면 봉치리	289-2	도	337	337	김*기	개천면 봉치리				
31	개천면 봉치리	313-3	대	10	10	최*중	용안리				
32	개천면 봉치리	313-4	답	7	7	최*중	용안리				
33	개천면 봉치리	188-1	답	24	24	한*구	울주군 언양면 서부리 187 세명다이아몬드아파트				
34	개천면 봉치리	164-1	도	69	69	김*준	개천면 봉치리				
35	개천면 봉치리	292-2	도	231	231	한*택	개천면 봉치리				
36	개천면 봉치리	191-1	도	36	26	김*식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반송로 **1, (반송동, 삼한1차아파트)				
37	개천면 봉치리	183-15	답	281	3	김*식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반송로 **1, (반송동, 삼한1차아파트)				
38	개천면 봉치리	183-16	답	46	46	한*구	개천면 봉치리				
39	개천면 봉치리	289-7	답	41	41	한*우	개천면 봉치리				
40	개천면 봉치리	311	답	147	87	김*길	개천면 봉치리				
41	개천면 봉치리	309-5	답	234	232	김*술	개천면 봉치리				
42	개천면 봉치리	309-8	답	48	48	김*식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반송로 **1, (반송동, 삼한1차아파트)				
43	개천면 봉치리	305-5	답	22	22	김*식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반송로 **1, (반송동, 삼한1차아파트)				

(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합 계				54,641	5,280						
1	개천면 봉치리	315-1	대	79	79	고성군					
2	개천면 봉치리	353	답	37	37	고성군					
3	개천면 봉치리	181-14	답	157	157	고성군					
4	개천면 봉치리	312-4	대	3	3	고성군					
5	개천면 봉치리	353-2	답	38	3	고성군					
6	개천면 봉치리	181-12	답	96	52	고성군					
7	개천면 봉치리	311-1	답	136	64	고성군					
8	개천면 봉치리	187-3	답	54	54	고성군					
9	개천면 봉치리	192-3	도	56	38	고성군					
10	개천면 봉치리	751	천	46,144	744	국 (국토교통부)					
11	개천면 봉치리	759	도	1,577	61	국 (국토교통부)					
12	개천면 봉치리	759-2	도	7	7	국 (국토교통부)					
13	개천면 봉치리	637	구	34	30	국 (농림축산식품부)					
14	개천면 봉치리	564	도	950	15	국 (농림축산식품부)					
15	개천면 봉치리	640	구	188	64	국 (농림축산식품부)					
16	개천면 봉치리	315-2	대	14	14	고성군					
17	개천면 봉치리	181-1	답	196	20	고성군					
18	개천면 봉치리	181-17	답	518	270	고성군					
19	개천면 봉치리	181-18	답	330	43	고성군					
20	개천면 봉치리	311-2	답	61	61	고성군					
21	개천면 봉치리	312-6	대	50	50	고성군					
22	개천면 봉치리	309-7	답	248	248	고성군					
23	개천면 봉치리	309-6	답	201	201	고성군					
24	개천면 봉치리	303-4	답	482	482	고성군					
25	개천면 봉치리	304-4	답	207	207	고성군					
26	개천면 봉치리	299	답	571	571	고성군					
27	개천면 봉치리	292-3	답	34	34	한*우	개천면 봉치리 2*7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28	개천면 봉치리	187	답	626	595	한*구	울주군 언양면 서부리 187 세명다이아몬드아파트 **1호				
29	개천면 봉치리	291-1	도	20	20			한*택	2*6		미등기
30	개천면 봉치리	289-2	도	337	337			김*기	3*1		미등기
31	개천면 봉치리	164-1	도	69	69			김*준	2*9		미등기
32	개천면 봉치리	292-2	도	231	231			한*택	2*6		미등기
33	개천면 봉치리	191-1	도	36	36	고성군					
34	개천면 봉치리	183-15	답	281	28	고성군					
35	개천면 봉치리	183-16	답	46	46	고성군					
36	개천면 봉치리	311	답	147	81	고성군					
37	개천면 봉치리	309-5	답	234	156	고성군					
38	개천면 봉치리	309-8	답	48	48	고성군					
39	개천면 봉치리	303-5	답	22	22	고성군					
40	개천면 봉치리	187-4	답	49	1	고성군					
41	개천면 봉치리	183-12	답	27	1	고성군					

고성군 고시 제2022-7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 4. 29.

고 성 군 수

- 1. 허가번호 : 고성2022-04호
- 2. 하천의 명칭 : 배둔천(지방하천)
-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기관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성명 :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 주소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동외로 121
-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
-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 위치 :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 498-193번지 외 3필지
 - 면적 : 영구점용 38㎡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 영구점용 : 2022년 4월 29일 ~ 영구(5년마다 연장신청)
- 7. 문의처 : 고성군청 건설과 하천관리담당(☎055-670-2763)

고성군 고시 제2022-76호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연안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 되었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2. 4. 29.

고 성 군 수

□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승인 내용

사 업 명	사 업 시행자	사 업 시행장소	사업구분	사업규모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동문지구 연안정비사업	경상남도 고성군수	경남 고성군 하일면 동화리	친수연안	해안산책로 L=241m	1,112	2021.01 ~ 2021.12

끝.

고성군 고시 제2022-77호

마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계획(2차변경) 승인 고시

고성군 마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사항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농어촌 정비법」 제58조 제3항, 제5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4. 28.

고 성 군 수

1. 사업의 목적

농촌 중심지를 지역의 잠재력과 고유의 테마를 살려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 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고, 배후마을과 도시를 연결하는 연결 거점으로서 지역생활권 구현의 중심 역할 수행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사업개요

○ 주요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 한마암 문화마당조성, 초선마을 회관개축, 마암천 산책로조성, 마을연결도로 조서, 마암복지회관 리모델링
- 지역경관개선: 중심가로 경관 정비, 마을길 가꾸기
- 지역역량강화: 교육 및 훈련, 컨설팅, 마을경영 등

○ 총사업비 : 5,600백만원(국비 3,920, 도비 504, 군비 1,176)

○ 사업기간 : 2018년~2022년(5년간)

3. 사업의 효과

- 농촌중심지의 생활편의시설 및 다원적 기능 확충
- 소재지의 지역중심기능 강화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4. 사업시행자 : 고성군수(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 지사 위탁시행)

5. 시행계획 승인내역 : 붙임과 같음

6. 기타 문의사항

- 시행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농촌정책과(☎055-670-4143) 및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055-670-70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시행계획 변경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사업비 변경 내역							증 감 사 유
	총사업비			연도별 내역				
	기승인 (A)	금회승인 (B)	증·감 (B-A)	2021까지	2022년	2022년 이후		
합 계	5,600,000	5,600,000	0	4,441,772	1,158,228	-	-	
소 계	2,759,664	2,611,403	-148,261	2,024,848	586,555	-	-	
순 공 사 비	2,461,094	2,611,403	150,309	2,024,848	586,555	-	-	
낙 찰 차 액	298,570	-	-298,570	-	-	-	-	
기초 생활 기반 확충	소 계	2,269,895	2,392,864	122,969	1,866,111	526,753	-	-
	한마암문화마당	1,971,087	2,084,221	113,134	1,630,175	454,046	-	○ 기 실정보고 내용 반영 보완 (현지역건 및 민원 반영) ○ 보험료 정산 ○ 물가변동에 따른 금액 조정 반영
	조선마을회관	194,913	204,006	9,093	181,223	22,783	-	○ 기 실정보고 내용 반영 보완 (현지역건 및 민원 반영) ○ 보험료 정산 ○ 물가변동에 따른 금액 조정 반영
	복지회관 리모델링	103,895	104,637	742	54,713	49,924	-	○ 기 실정보고 내용 반영 보완 (현지역건 및 민원 반영) ○ 보험료 정산 ○ 물가변동에 따른 금액 조정 반영
지역 경관 개선	소 계	191,199	218,539	27,340	158,737	59,802	-	-
	마암천산책로	86,991	113,251	26,260	80,416	32,835	-	○ 보도교, 보도데크 추가반영 ○ 사급철근 추가반영 ○ 보험료 정산
	마을연결도로	27,139	27,139	0	24,900	2,239	-	○ 물량 변경
	중심가로경관정비	70,676	72,452	1,776	47,724	24,728	-	○ 먼나무 → 배롱나무 품종 변경 ○ 보험료 정산
	마을길 가꾸기	6,393	5,697	-696	5,697	-	-	○ 보험료 정산
자재 대	소 계	907,153	1,030,868	123,715	775,648	255,220	-	○지급자재 물량 조정
폐기물 처리비	소 계	84,996	84,996	0	55,144	29,852	-	-
	건설 폐기물	69,082	69,082	0	39,230	29,852	-	-
	지정 폐기물	15,914	15,914	0	15,914	-	-	-
한전 납입금	소 계	7,349	7,349	0	6,375	974	-	-

용지 매수 보상 비	소 계	818,327	818,327	0	787,272	31,055	-	-
역량 강화	소 계	305,000	265,056	-39,944	156,790	108,266	-	-
	교육 및 홍보	260,660	260,660	0	154,394	106,266	-	○ 마을경영지원비(사무장 활동비) 절감
	마을경영지원	44,340	4,396	-39,944	2,396	2,000	-	
제경 비	소 계	717,511	782,001	64,490	635,695	146,306	-	-
	기 본 계 획	181,839	181,839	0	181,839	-	-	-
	세 부 설 계	113,214	113,214	0	113,214	-	-	-
	공 사 감 리	277,376	333,966	56,590	253,825	80,141	-	○ 공사비 연동에 따른 조정
	사 업 관 리	63,628	71,073	7,445	56,248	14,825	-	○ 공사비 연동에 따른 조정
	잡 지 출 및 타 기	81,454	81,909	455	30,569	51,340	-	○ 공사비 연동에 따른 조정

고성군 고시 제2022-80호

고성군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4. 29.

고 성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 변경

변경 전 도로명주소	변경 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변경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일	폐지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민원봉사과(☎055-670-2177)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고성읍 수남리 236-1	고성읍 남포로68번길 101-10	2022.04.29.	건물번호부여신청	남포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80m지점에서 분기되는 도로	
2	고성읍 교사리 603	고성읍 송학고분로 99	2022.04.29.	건물번호부여신청	문화재인 고성 송학동고분군으로 연결되는 길임을 반영	
3	고성읍 월평리 315-9	고성읍 남해안대로 2169	2022.04.29.	건물번호부여신청	남해안 자연지명 활용	
4	고성읍 월평리 711-1	고성읍 월평5길 16-5	2022.04.29.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고성읍 월평리)을 이용하는 다섯번째 도로	
5	고성읍 신월리 351	고성읍 신월3길 103	2022.04.29.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고성읍 신월리)을 이용하는 세번째 도로	
6	고성읍 대독리 33-2	고성읍 대독산업로 83-46	2022.04.29.	건물번호부여신청	대독산업단지가 위치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	
7	하일면 송천리 594	하일면 송천1길 63-22	2022.04.29.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하일면 송천리)을 이용하는 첫번째 도로	
8	상리면 무선리 96-1	상리면 부포1길 97-35	2022.04.29.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상리면 부포리)을 이용하는 첫번째 도로	
9	대가면 척정리 1067	대가면 척정2길 303-12	2022.04.29.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대가면 척정리)을 이용하는 두번째 도로	
10	대가면 유흥리 244-5	대가면 대가로 499-10	2022.04.29.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대가면)을 이용하여 대가로로 명명	
11	대가면 신전리 148	대가면 연화산1로 107-115	2022.04.29.	건물번호부여신청	연화산도립공원으로 연결되는 종단 길임을 반영하여 도로명 부여	
12	영오면 연당리 984-1	영오면 옥천로 1479-29	2022.04.29.	건물번호부여신청	연화산도립공원의 옥천사로 연결되는 길임을 반영	
13	영오면 연당리 984-7	영오면 옥천로 1479-31	2022.04.29.	건물번호부여신청	연화산도립공원의 옥천사로 연결되는 길임을 반영	
14	동해면 양촌리 748	동해면 양촌5길 22-32	2022.04.29.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동해면 양촌리)을 이용하는 다섯번째 도로	
15	고성읍 덕선리 산1-6	고성읍 덕선2길 16-28	2022.04.29.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고성읍 덕선리)을 이용하는 두번째 도로	

도로명주소 폐지

연번	관할구역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일	폐지사유	비고
1	고성읍	송학고분로 99	2022.04.29.	건물신축을 위한 건물 멸실	
2	고성읍	월평5길 16-5	2022.04.29.	건물신축을 위한 건물 멸실	
3	대가면	척정2길 303-12	2022.04.29.	건물신축을 위한 건물 멸실	

고성군 고시 제2022-81호

고성군관리계획(주차장: 화물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고성군 고시 제2019-195호(2019. 12. 19.)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경남 고성군 고성읍 울대리 1029번지의 군계획시설(주차장: 화물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 는 고성군(도시교통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 5. 2.

고 성 군 수

1. 고성군관리계획(주차장: 화물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조서: 아래 참조
2. 관계도면: 게재 생략

군관리계획(주차장: 화물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조서

□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화물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자동차 정류장	공영 차고지	기정	고성군 고성읍 울대리 193번지 일원	19,866	감) 71.9	19,794.1	고성군 고시 제2019-195호 (2019.12.19.)
				변경	고성군 고성읍 울대리 1029번지				

2. 화물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 사유
①	자동차 정류장	○ 시설면적 변경 - (기정) 19,866㎡ → (변경) 19,794.1㎡(감 71.9㎡) ○ 위치(대표 지번) 변경 - (기정) 고성읍 울대리 193번지 일원 → (변경) 고성읍 울대리 1029번지	○ 고성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지적 확정측량 결과 반영을 위해 군관리계획(주차장: 화물자동차정류장)을 변경 결정하고자 함.

